

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6-4호

##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02월 12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### 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사유

- 세입·세출 예산의 출납 폐쇄기한을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제1차 정례회 일자를 정비하여 정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제3조(정례회) 제1항에 규정한 제1차 정례회 일자 변경
  - ▷ 매년 7월 8일에서 **“6월 1일”**로 개정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(구포동), 팩스 309-4099)에게 제출하거나 전화(051-309-4098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**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**

## **일부개정조례안**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7월 8일”을 “6월 1일”로 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례회)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7월 8일</u> 에 집회하고,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. ② · ③ (생 략)	제3조(정례회) ① ----- --- <u>6월 1일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